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96
----------	-----

2020. 9. 9.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. 9. 4. 복진경 의원 등 7명

나. 상정의결

- 제28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(2020. 9. 9.)
“ 수정가결 ”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 : 대표발의자 복진경 의원)

-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요건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연구단체 운영의 활성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요건을 3명이상으로 완화하고,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동시 가입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)
- 연구단체에 일정비용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, 연구단체가 외부의 연구기관·단체 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
4.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

나. 예산조치 : 2020년 본예산 143,365천원 반영

5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김효섭)

- 구성인원을 축소하고 참여대상을 늘리는 개정안은 연구단체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는 사안으로 구성원의 축소에 의해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,
- 연구개발비의 명문화는 의원의 연구활동 수행에 있어 적극적인 책임활동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음

6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질 의: 정책연구용역은 기본적으로 외부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, “외부의 연구기관·단체 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”는 조문은 의미가 중복되는 느낌이 있는데
- 답 변: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수정하도록 하겠음

7. 토론 요지

- 토론과정 중, 허주연 의원으로부터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모든 조항과 의미가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됨

8. 심사 결과 : “수정가결”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10. 기타 사항 : “없음”

- 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.
2.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

수 정 안

관련의안번호
제296호

발의일자 : 2020. 9. 9.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수정이유

의미가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고 용어를 정리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(안 제2조제2호, 안 제7조제1항제3호, 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안 제10조제1항, 안 제11조제3호, 별지 제2호서식, 별지 제5호서식, 별지 제6호서식)
-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함(안 제8조제4항)

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

수 정 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.

안 제7조제1항제3호를 (현행대로 하기 위하여)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의원정책개발비 지급결정 및 회수에 관한 사항

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(현행대로 하기 위하여)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.
- ③ 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.

안 제8조제4항 중 “연구활동비”를 “연구활동”으로, “전문가를 활용하거나, 외부의 연구기관·단체 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”를 “전문가를 활용

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안 제10조제1항을 (현행대로 하기 위하여)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안 제11조제3호를 (현행대로 하기 위하여)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한 경우

별지 제2호서식,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(현행대로 하기 위하여)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2. (생 략)</p> <p>제3조(연구단체의 구성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연구단체는 <u>5명</u> 이상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각 의원은 <u>1개</u> 단체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.</p> <p>④ · ⑤ (생 략)</p> <p>제7조(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) ① 운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“연구활동비”란 연구단체의 입법 및 정책개발 등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로서, 의정운영 공동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.</u></p> <p>3. (현행 제2호와 같음)</p> <p>제3조(연구단체의 구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3명</u>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<u>2개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·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) ① ----- ----- -----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연구단체의 구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④ ·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</p>

1.·2. (생략)

3. 의원정책개발비 지급결정 및 회수에 관한 사항

4.·5. (생략)

② (생략)

제8조(연구단체 지원 등)

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.

③ 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.

<신설>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연구활동비·의원정책개발비 -----

4.·5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연구단체 지원 등)

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, -----.

②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-----

-----.

③ -----

-----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-----

-----.

④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

1.~5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연구단체 지원 등)

①~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연구활동비

동비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거나, 외부의 연구기관
• 단체 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용역에 참여
할 수 있다.

동 -----
---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.

제10조(연구활동 보고서 등의 제출) ①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연구활동 보고서 등의 제출) ①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-----

-----.

제10조(연구활동 보고서 등의 제출) ①~②
(현행과 같음)

② (생략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연구단체의 등록 취소)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11조(연구단체의 등록 취소) -----

-----.

제11조(연구단체의 등록 취소) 1.~3. (현행과 같음)

1. 2. (생략)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승인된 연구활동계

3. -----

획 이외의 목적으로 의
원정책개발비를 사용
한 경우

----- 연구
활동비 및 의원정책개
발비-----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지 제2호서식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구활동계획서</p> <p><small>*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,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.</small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">연구단체명</td> <td colspan="2"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연구내용</td> <td style="width: 10%;">주제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목적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연구활동기간</td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 ~ 년 월 일</td> </tr> <tr> <td>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</td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별첨)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정 책 개발비</td> <td>총 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금 원 (W)</td> </tr> <tr> <td>산출내역</td> <td>* 세부내역 별첨</td> </tr> <tr> <td>기 타</td> <td colspan="2"></td> </tr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50px;">년 월 일 신청인 대표 : (인)</p> <p>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 귀하</p>	연구단체명			연구내용	주제		목적		연구활동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		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	(별첨)		정 책 개발비	총 액	금 원 (W)	산출내역	* 세부내역 별첨	기 타			<p>[별지 제2호서식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구활동계획서</p> <p><small>*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,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.</small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">연구단체명</td> <td colspan="2"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연구내용</td> <td style="width: 10%;">주제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목적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연구활동기간</td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 ~ 년 월 일</td> </tr> <tr> <td>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</td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별첨)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연구활동비</td> <td>총 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금 원 (W)</td> </tr> <tr> <td>산출내역</td> <td>* 세부내역 별첨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정 책 개발비</td> <td>총 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금 원 (W)</td> </tr> <tr> <td>산출내역</td> <td>* 세부내역 별첨</td> </tr> <tr> <td>기 타</td> <td colspan="2"></td> </tr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50px;">년 월 일 신청인 대표 : (인)</p> <p>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 귀하</p>	연구단체명			연구내용	주제		목적		연구활동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		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	(별첨)		연구활동비	총 액	금 원 (W)	산출내역	* 세부내역 별첨	정 책 개발비	총 액	금 원 (W)	산출내역	* 세부내역 별첨	기 타			<p>[별지 제2호서식]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구활동계획서</p> <p><small>*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,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.</small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">연구단체명</td> <td colspan="2"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연구내용</td> <td style="width: 10%;">주제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목적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연구활동기간</td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 ~ 년 월 일</td> </tr> <tr> <td>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</td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별첨)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정 책 개발비</td> <td>총 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금 원 (W)</td> </tr> <tr> <td>산출내역</td> <td>* 세부내역 별첨</td> </tr> <tr> <td>기 타</td> <td colspan="2"></td> </tr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50px;">년 월 일 신청인 대표 : (인)</p> <p>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 귀하</p>	연구단체명			연구내용	주제		목적		연구활동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		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	(별첨)		정 책 개발비	총 액	금 원 (W)	산출내역	* 세부내역 별첨	기 타		
연구단체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내용	주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목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활동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	(별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 책 개발비	총 액	금 원 (W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산출내역	* 세부내역 별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 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단체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내용	주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목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활동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	(별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활동비	총 액	금 원 (W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산출내역	* 세부내역 별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 책 개발비	총 액	금 원 (W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산출내역	* 세부내역 별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 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단체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내용	주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목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활동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	(별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 책 개발비	총 액	금 원 (W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산출내역	* 세부내역 별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 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지 제6호서식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구활동 보고서</p> <p><small>*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,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.</small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0%; text-align: center;">단 체 명</td> <td colspan="2"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 내 구 중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구주제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구목적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구결과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별첨)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 책 개 발 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령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금 원 (₩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집행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금 원 (₩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잔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금 원 (₩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특 기 사 항</td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"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"</td> </tr> </table> <p><small>붙임 1.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 2. 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 1부 3. 기타 필요한 사항</small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 신청인 대표 : (인)</p> <p>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 귀하</p>	단 체 명			연 내 구 중	연구주제		연구목적		연구결과	(별첨)	정 책 개 발 비	수령액	금 원 (₩)	집행액	금 원 (₩)	잔액	금 원 (₩)	특 기 사 항	"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"		<p>[별지 제6호서식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구활동 보고서</p> <p><small>*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,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.</small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0%; text-align: center;">단 체 명</td> <td colspan="2"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 내 구 중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구주제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구목적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구결과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별첨)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 구 동 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령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금 원 (₩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집행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금 원 (₩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잔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금 원 (₩)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 책 개 발 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령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금 원 (₩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집행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금 원 (₩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잔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금 원 (₩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특 기 사 항</td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"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"</td> </tr> </table> <p><small>붙임 1.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 2.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1부 3. 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 1부 4. 기타 필요한 사항</small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 대표 : (인)</p> <p>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 귀하</p>	단 체 명			연 내 구 중	연구주제		연구목적		연구결과	(별첨)	연 구 동 비	수령액	금 원 (₩)	집행액	금 원 (₩)	잔액	금 원 (₩)	정 책 개 발 비	수령액	금 원 (₩)	집행액	금 원 (₩)	잔액	금 원 (₩)	특 기 사 항	"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"		<p>[별지 제6호서식]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구활동 보고서</p> <p><small>*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,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.</small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0%; text-align: center;">단 체 명</td> <td colspan="2"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 내 구 중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구주제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구목적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구결과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별첨)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 책 개 발 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령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금 원 (₩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집행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금 원 (₩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잔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금 원 (₩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특 기 사 항</td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"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"</td> </tr> </table> <p><small>붙임 1.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 2. 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 1부 3. 기타 필요한 사항</small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 신청인 대표 : (인)</p> <p>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 귀하</p>	단 체 명			연 내 구 중	연구주제		연구목적		연구결과	(별첨)	정 책 개 발 비	수령액	금 원 (₩)	집행액	금 원 (₩)	잔액	금 원 (₩)	특 기 사 항	"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"	
단 체 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 내 구 중	연구주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연구목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연구결과	(별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 책 개 발 비	수령액	금 원 (₩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집행액	금 원 (₩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잔액	금 원 (₩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특 기 사 항	"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"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단 체 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 내 구 중	연구주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연구목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연구결과	(별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 구 동 비	수령액	금 원 (₩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집행액	금 원 (₩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잔액	금 원 (₩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 책 개 발 비	수령액	금 원 (₩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집행액	금 원 (₩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잔액	금 원 (₩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특 기 사 항	"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"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단 체 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 내 구 중	연구주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연구목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연구결과	(별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 책 개 발 비	수령액	금 원 (₩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집행액	금 원 (₩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잔액	금 원 (₩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특 기 사 항	"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"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복진경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9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9. 4.

발 의 자 : 복진경·안지연·김진홍·
김영권·허주연·이호귀·
김형대(이상7인)

1. 제안이유

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요건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연구단체 운영의 활성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요건을 3명이상으로 완화하고,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동시 가입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)

나. 연구단체에 일정비용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, 연구단체가 외부의 연구기관·단체 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
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“연구활동비”란 연구단체의 입법 및 정책개발 등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로서,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5명”을 “3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1개”를 “2개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3호 중 “의원정책개발비”를 “연구활동비·의원정책개발비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의장은”을 “의장은 연구단체에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,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의원정책개발비”를 각각 “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거나, 외부의 연구기관·단체 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의원정책개발비”를 “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”로 한다.

제11조제3호 중 “의원정책개발비”를 “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,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2호서식]

연구활동계획서

「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연구단체명		
연구내용		주제
		목적
연구활동기간		년 월 일 ~ 년 월 일
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		(별첨)
연구 활동비	총액	금 원 (₩)
	산출내역	※ 세부내역 별첨
정책 개발비	총액	금 원 (₩)
	산출내역	※ 세부내역 별첨
기타		

년 월 일
신청인 대표 : (인)

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 귀하

[별지 제6호서식]

연구활동 보고서

「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
단 체 명		
연 내 구 용	연구주제	
	연구목적	
	연구결과	(별 첨)
연 활동 비	수령액	금 원 (₩)
	집행액	금 원 (₩)
	잔액	금 원 (₩)
정 책 개 발 비	수령액	금 원 (₩)
	집행액	금 원 (₩)
	잔액	금 원 (₩)
특 기 사 항		“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”

- 붙임 1.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
2.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1부
3. 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 1부
4. 기타 필요한 사항

년 월 일

대 표 : (인)

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 귀하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제3조(연구단체의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연구단체는 <u>5명</u> 이상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각 의원은 <u>1개</u> 단체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.</p> <p>④·⑤ (생략)</p> <p>제7조(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)</p> <p>① 운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<u>의원정책개발비</u> 지급결정 및 회수에 관한 사항</p> <p>4.·5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“연구활동비”</u>란 연구단체의 입법 및 정책개발 등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로서, <u>의정운영 공동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.</u></p> <p>3. (현행 제2호와 같음)</p> <p>제3조(연구단체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3명</u> ----- -.</p> <p>③ ----- <u>2개</u> ----- -----.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)</p> <p>①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연구활동비·의원정책개발비</u> -----</p> <p>4.·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제8조(연구단체 지원 등)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.

③ 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10조(연구활동 보고서 등의 제출) ①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연구단체 지원 등)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, -----
-----.

②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-----

-----.

③ -----

-----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-----
-----.

④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거나, 외부의 연구기관·단체 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.

제10조(연구활동 보고서 등의 제출) ①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-----

-----.

② (생략)

제11조(연구단체의 등록취소) 의
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
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
다.

1.·2. (생략)

3.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
목적으로 의원정책개발비를
사용한 경우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연구단체의 등록취소) --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---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
개발비-----
--